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7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 안태준·조인철·이기헌

김기표 • 박지혜 • 송재봉

서영석 • 박용갑 • 홍기원

주철현 · 강준현 · 김 현

박희승 • 문진석 • 김 윤

이재관 • 정준호 • 소병훈

허성무 · 채현일 · 윤종군

권향엽 • 윤건영 • 박홍배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'사회적 재난'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전세사기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비대칭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하여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 한편,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.

이에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, 주택 가격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통합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8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6제4항 중 "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"를 "확정일자부여기관에"로 한다.

제3조의7의 제목 중 "정보"를 "납세증명서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사항을"을 "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"로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다만,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「국세징수법」 제109 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 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 음할 수 있다.

제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8(주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·관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(이하 "주택임대차정 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1. 확정일자 부여일
- 2. 차임 및 보증금 정보
- 3.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
- 4.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
- 5.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
- ②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및 주택사업 등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 택임대차정보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체계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있다. 이 경우 다가구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제공할수 있다.
- ⑤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임대차정보체계

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 제3조의6(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 차 정보제공 등) ① ~ ③ 차 정보제공 등) ① ~ ③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 ----확정일자부여기관에-----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 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⑤・⑥ (생 략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7(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 제3조의7(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무)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 의무) ----------「국세징수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법」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 서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 <단서 신설> 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를---만.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「국세징수법」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와 체납액의 열람 및 「지방세 징수법 |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 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 다.

- 1.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| <삭 제>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 임 및 보증금 등 정보. 다만,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 할 수 있다.
- 2. 「국세징수법」 제108조에 | <삭 제> 따른 납세증명서 및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. 다만,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「국세징수<u>법」 제109조제1항</u> 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 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 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조의8(주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 으로 유지 ·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 계(이하 "주택임대차정보체계" 라 한다)를 구축・운영하여야

한다.

- 1. 확정일자 부여일
- 2. 차임 및 보증금 정보
- 3.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
- 4.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
- 5.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
- ②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및 주택사업 등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정보 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주택임대차정보체 계를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대통 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 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가구주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해당 주 택 전체를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일반 국민에 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사항을 제공하는 경우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체계와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.
- ⑤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 택임대차정보체계의 구축·운 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임대차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